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15재다623 소유권말소등기
원고(재심원고) A
피고(재심피고) B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5. 4. 9.자 2014다90485 판결
판 결 선 고 2015. 9. 10.

주 문

재심청구를 기각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이 유

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.

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어야 한다,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

하므로, 재심사유 가운데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,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서증의 위조·변조에 관한 것이나 같은 항 제7호의 허위진술에 관한 것 등에 대하여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 사유로 삼을 수 없다(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9재다746 판결, 대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재다540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6호,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재심청구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,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김소영
-----	-----	-----

	대법관	이인복
--	-----	-----

주 심	대법관	김용덕
-----	-----	-----

	대법관	고영한
--	-----	-----